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3호 2018. 12. 10.(월)

훈 령

-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2

고 시

-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 교시 ----- 5

공 고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11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 12

기 타

- 시정알림판 ----- 15

회람

목포시 훈령 제815호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12월 10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청소지도담당”을 “청소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점의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 1.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9-2-2, 2010-3-15, 2016-6-27>

실적가점 대상 및 배점표(제17조제2항 관련)

분 야 별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배 점	가 점 요 건
1. 새로운 업무발굴 및 업무관련 창안	•중앙제안 채택 - 금 상 - 은상·동상 - 장려·노력상 ※ 시(자체평가) 및 도 제안 채택시는 중앙제안 배점의 2분의1 부여	1.0점 0.8점 0.6점	•당해직급 수상에 한함 •공동제안의 경우 2명 까지 가점부여 •부제안자(1명)는 주제안자의 2분의1점 부여
2. 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자	•예산절감 및 세수확보액(년간)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0.5점 0.3점 0.2점 0.1점	•인원: 2명이내(핵심적인 업무 담당한 담당 및 실무자) •세원확보 및 예산절감으로 포상금(상사업비)을 받았거나, 중앙부처 감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중앙단위 등 평가 기관표창 수상	•중앙단위 평가 등 기관표창 수상부서 - 최우수상(1위) - 우 수 상(2위) - 장 려 상(3위) ※ 도단위 표창은 중앙단위 배점의 2분의1 부여	0.5점 0.3점 0.2점	•당해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인원: 3명 이내(부서장 및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담당·실무자) •부서장은 년 1회에 한함.
4. 포상가점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표창 수상 - 훈장,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 청·처장(차관급), 도지사 표창 - 시장 표창	1.0점 1.0점 0.5점 0.4점 0.2점 0.1점	•업무와 관련된 포상으로 당해기간에 한하여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 •포상대상 및 개인별 인사기록 확인(인사부서) ※시장지시사항(2006.12.11)
5. 격무부서 근무자 가점	•격무부서 대상 - 공보과(공보담당 및 직원) -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담당 및 직원) - 자원순환과(청소행정담당 및 직원) -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운수사업담당 및 직원) - 건설과(도로정비담당 및 직원) - 문화예술과(예술진흥담당 및 직원) •공공시설물 전기안전관리 선임자 •평정단위별 기과·격무업무 담당자 -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로 2개 업무 이내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0.2점 ~0.3점 0.2점 0.1점	•근무경력 1년 이상자 0.2점, 1년6개월 이상자 0.3점 •당해기간에 한하여 1회 부여
6. 외국어 능력평가 우수자	•외국어 경진대회 우수자 - 중앙단위 평가 우수자 - 도 단위 평가 우수자	0.5점 0.3점	•외국어 경진대회 결과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7. 다자녀 출산	•다자녀 출산 공무원 - 2자녀 - 3자녀 이상	0.2점 1.0점	•2자녀는 2007년 1월 이후 출생자를 적용하고, 3자녀 이상은 2010년 4월 이후 출생자를 적용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하며 당해 직급에 한하여 적용
8. 자원봉사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직원 우대 - 반기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0.1점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봉사활동 참여실적 개인별 출력자료 제출분에 한함(근무시간 내 실적 제외)
9. 동근무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사회복지직으로 동에서 1년이상 근무	0.1점	•당해기간에 한하여 1회 부여
10.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실적	① 투자자본 300억원 이상 ② 투자자본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③ 투자자본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④ 투자자본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점 1.2점 0.8점 0.5점	•투자유치 협약 후 공장등록 및 입주확인 등 착공까지 확인된 건만 인정 -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한 투자유치 건 •인원: 핵심적인 역할을 한 2명 이내 •당해기간에 한하며, 총 체결건수의 투자자본금의 합계로 배점을 인정하되 그 배점은 1.5점을 초과 부여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직위공모제) ② (생략) 2. 6급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계약담당, 서무담당, 시정담당, 인사담당 등 선호직위와 공보담당, 교통지도담당, <u>청소지도담당</u>, 도로정비담당 등 격무직위로 한다.	제16조(직위공모제) ② (생략) 2. ----- ----- -----<u>청소행정담당</u>----- -----.
제17조(근무실적가점 부여) 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제2항의 공무원에 대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제17조(근무실적가점 부여) ① ----- ----- ----- <u>실적가점을 부여한다.</u>

목포시 고시 제2018-181호

고 시

목포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목 포 시 장

1. 의 결 일 자 : 2018. 7. 25.

2. 의 결 내 역

가.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

나. 관광교류협의회 규약 세부내용 : 붙임

규 약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대구 중구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대구 중구는 국내 관광 선도 자치단체로서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성장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간 관광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관광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명칭은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 기반조성과 공동협력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구에 둔다.

② 사무지원은 시·군·구의 해당업무의 주무담당(주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방문객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2. 회원간 관광홍보 교류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의 공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4. 기타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 사업 수행 등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회원) ① 본 협의회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협의회는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대구 중구 등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본 협의회는 회원은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본 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추가영입은 협의회 회원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한다.

제6조(임원) ①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협의회는 회장은 1명을 두되,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다음 회의개최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는 사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간사는 회의운영, 회의록작성 비치, 예산집행, 결산 및 회원연락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임기) (삭제 2015. 7. 9)

제9조(임원선출) (삭제 2015. 7. 9)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 본 협의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2. 회의장소는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정하되 회원간 합의하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회는 회원 상호 간 협의하여 소집한다.
4. 회의주최는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재한다.
5. 회의참석은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 전·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실무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별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2.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부의안건을 사전 협의하고,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의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결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참석자나 타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사업예산) ① 본 협의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는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 분담금은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3. 분담금은 년 1천만원으로 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납부한다.

제14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의 회의운영 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한다.

제15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② 협의회의 예산집행상황은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지난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약개정) 본 규약은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예외사항)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15. 7. 9>

본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3>

본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고 제2018-1533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목 포 시 장

1. 사유: 인증기 교체
2. 등록 및 폐기일: 2018. 12. 10.(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옥암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고딕체	인증기용
폐기	옥암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고딕체	"

목포시 공고 제2018-154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8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26일
2. 운행정지 명령 등록 예정일 : 2018년 12월 27일 이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내용

가. 폐업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됨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할 예정이오니 정당한 권리 없이 운행을 금하며,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상속 또는 명의이전 등)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356, 3557, 81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대상 목록

연번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	전남54가8358	EF쏘나타LPG장애인차	박*원
			김*석
2	15수6736	그랜저(GRANDEUR)	전*훈
			전*숙
3	59나5776	옵티마 리갈	성*복
			성*준
4	59나6560	무쏘	황*석
			편*석
5	59가1806	그랜저XG	김*임
6	전남27나3941	EF쏘나타LPG	박*영
			박*철
7	59나8109	매그너스 2.0S LPG	박*술
			박*철
8	전남80나9304	포터초장축슈퍼캡(PORTER)	강*택
9	59나3748	쏘렌토 GLS	엄*길
			엄*원
10	전남28거6693	카스타	조*형
			조*용
11	60우5567	그랜저	문*호
12	03어5954	아우디A84.2콰트로	박*옥
13	전남80나6325	봉고프런티어	대*재
14	59나5126	스포티지	황*수
15	59가7744	그랜저XG	조*준
16	전남28나2571	캐딜락컨코어	장*석
17	전남94나4082	봉고프런티어	노*천
18	12라9847	그랜저(GRANDEUR)	임*년
19	전남28거7143	그랜저	이*순
20	52오8984	SM520V	장*덕
21	03머1907	그랜저XG	오*필
22	전남28너7410	옵티마	조*민
23	전남28너4063	스타렉스인터쿨러단축9인오토	박*현
24	29구6689	그랜저	유*일
25	전남28가2883	아카디아(ARCADIA)	박*남

26	전남80가2902	ROCSTA-R2(룩스타R2)	
27	전남80나3406	포터초장축슈퍼캡	안*길
28	전남70가6815	트라제XG	
29	전남56가7872	그랜저	박*재
30	60주3901	쏘렌토 GL	박*인
31	전남92가1347	와이드봉고킹캡	정*송
32	전남28가6398	수퍼살롱2.0AT	정*송
33	전남55가4887	SM520	정*명
34	20나6183	쏘나타Ⅲ2.0	(주)지*블
35	전남80나4024	레토나	(주)건*설
36	09오6846	에쿠스(EQUUS)	성*사
37	전남28라9126	그랜저	대*링(주)
38	05로3268	카렌스	한*설(주)
39	전남28거2442	카니발	(주)영*망
40	전남28거4145	카니발	(주)미*설
41	전남28나4100	다이너스티	(주)신*업
42	전남28거2030	매그너스2.0DOHC로얄	(주)대*건

시 정 알 림 판

내일의 스포츠 영웅에게 스포츠강좌를 선물하세요 !

스포츠와 국민을 이어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12. 17(월)~12. 28.(금)
- 운영기간 : 2019. 1~12월(단, 기금 등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내 유·청소년 만5세~만18세(2001. 1. 1~2014. 12. 31생 기준)
- 신청기준 :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 선정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매달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6개월 이상 지원)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 02-410-1298~9 (평일 09:00~18:00)



교육체육과 ☎ 061-270-3402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18. 7. 1.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입 원 :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 외 래 :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재산기준 :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연소득 15% 초과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전체 의료비) = 급여 일부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원 까지 지원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총합 180일까지 지원
- 유의사항
 - 민간보험(실손·정액 공통) 가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다만, 민간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남은 과도한 의료비 차액이 있을 시 상담 후 지원 신청
 - 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시 차액을 제외 후 지원

사회복지과 ☎ 061-270-8266

시 정 알 림 판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안내



- 기 간 : 2018. 12. 31.부터
- 내 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보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
 -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강증진과 ☎ 061-270-892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안내

- 디딤씨앗통장이란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가입대상아동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
 - ※ 2018년 기준, 2001년생~2006년생
- 가입·지원신청 문의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 기업·개인후원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02-790-0784

여성가족과 ☎ 061-270-8464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선정기준('19년도 / 4인가구 기준)

구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생계	138만원	의료	185만원
주거	203만원	교육	231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 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사회복지과 ☎ 061-270-3314